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최근 소비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인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대상 물품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 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주요 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

현행	개정안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 ----- 2022년 12월 31일 ----- -----.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 2022년 12월 31일 -----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Contact



홍재현 관세사

T 070-4353-1547
E jhhong@esein.co.kr



전소연 관세사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